

군유 행정재산 (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) 무상사용 동의안

의안 번호	6
----------	---

제안연월일 : 2026. 06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(봉평면) 로컬푸드 직매장은 미래 지역먹거리 수요에 기초한 연중 안정적인 생산·공급·소비기반 확보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 시기 확대, 유통단계 축소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서,
- 군유 행정재산인 평창(봉평면) 로컬푸드 직매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그 사용료를 전액 면제(무상사용)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제2의2호에 따라 평창군의회 동의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대상: 평창(봉평면) 로컬푸드 직매장
- 관리주체: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평창푸드팀
- 수탁기관: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
- 위탁금액: 무상사용
- 법적근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(사용료 감면)
- 위탁기간: 2026. 7. ~ 2031. 6.(5년)
- 위탁내용: 평창(봉평면)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·관리

나. 위탁시설 현황

○ 기본현황

- 소재지: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96-51번지
- 부지면적: 1,813㎡
- 건축규모: 건축면적 392.32㎡ / 연면적 659.79㎡ (지상 2층)

○ 층별 용도 및 관리계획

구분	면적(㎡)	주요용도	관리 및 운영 계획
1층	339.58	로컬푸드 직매장	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무상위탁 운영
2층	320.21	피로연장(다습관)	복지정책과 재산 이관(준공 후)
옥상	-	부속공간	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무상위탁 운영
기타	-	주차장, 외부 부속시설 등	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무상위탁 운영

※ 위탁범위 : 2층 피로연장(320.21㎡)과 테라스를 제외한 1층 직매장, 옥상, 외부 주차장 및 부속시설 일체를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위탁범위로 지정

다. 추진현황

-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건축 기획용역: 2024. 5.
-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지방재정투자심사: 2024. 8.
-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공유재산관리계획: 2024. 9.
-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실시설계 완료: 2025. 1.
-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공사 착공: 2025. 4.
-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: 2025. 12.
-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공사 공사중지 해제: 2026. 4.
-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공사 준공 : 2026. 6. 16.

3. 운영계획 및 검토의견

○ 운영계획

- 준공후 2층 시설은 복지정책과로 즉시 이관하여 별도 관리함.
- 1층 직매장과 옥상, 외곽 부속시설은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함.

○ 검토의견(필요성)

- 본 시설은 로컬푸드 판매를 통하여 선순환 먹거리 체계의 확립과 군민의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거점 시설임.
-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재단법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객 편의 공간의 통합 관리가 필요함.
-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2층 제외 시설 전체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면제(무상 사용)하고자 함.

4. 향후계획

- 평창(봉평면) 로컬푸드 직매장 준공: 2026. 6. 16.
-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(협약) 체결: 2026. 7.
-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준비 및 시범운영: 2026. 7. ~ 8. 초
- 로컬푸드 직매장 정식 개장: 2026. 8. 중순

5. 참고사항

○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지적도	위치도(위성사진)
	
현장사진	
	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 2. ~ 3. 생략
 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- ①~④ 생략
-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
 2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
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
□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5조(심의회 의 업무)

① 심의회 의 심 의 사항 은 다음 각 호 와 같다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2. 삭제<2008.10.17.>
3.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
4. 삭제<2015.10.08.>
5.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 간 무상 이관
6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하여 심의회 의 적 정 심 의 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, 취득·처분에 관한 재심의(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)
7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
8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
9.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
- 10.~11. 생략